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66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9.
발의자 : 이수진 · 김문수 · 서영석
백혜련 · 송옥주 · 김남희
조정식 · 백선희 · 전진숙
장종태 · 남인순 · 전종덕
최혁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아동보호조치의 하나로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 · 양육하도록 하는 가정위탁을 규정하고 있음. 가정위탁보호는 원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의 개별적 상황 및 기질에 맞게 양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보호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으나, 일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확대 시행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.

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채널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제1항).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, 위반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”를 “아동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, 위반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
2.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홍보
3. 그 밖에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홍보영상의 제작·배포·송출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<u>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, 위반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</u>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「방송법」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.	제24조(홍보영상의 제작·배포·송출) ① ----- <u>아동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-----</u> -----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1. <u>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, 위반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</u> 2. <u>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홍보</u> 3. <u>그 밖에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
<u><신 설></u>	② · ③ (생략)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